

##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5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년 월 일
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### 1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(안 제23조)

### 3. 근거 법령 : 불 임

### 4. 의 안 전 문 : 불 임

### 5. 신 . 구조문 대비표 : 불 임

- 첨부 1. 근거법령 1부.  
2. 입법예고 사본 1부.

##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”를 “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23조 단서중 “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를 “「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준하여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</b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b>제23조(실비보상 등)</b>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</b></p> <p><b>제1조(목적)</b> _____ 「지방자치법」 _____ _____ _____ _____</p> <p><b>제23조(실비보상 등)</b> _____ _____ _____ 「제천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준하여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

## < 관계법령 >

### 지방자치법

[일부개정 2007.05.17 법률 제8435호]

- 제8조 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

#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6.10.17 대통령령 제19702호]

- 제8조 (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)**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[별표 1] <개정 2000.7.1>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(제8조관련)

구 분	시·도사무	시·군·자치구 사무
타. 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설치·운영에 관한 사무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지원	읍·면·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

- 제42조 (자문기관의 설치)**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1995.7.1, 1999.12.31, 2005.4.27>

##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

[1995. 1. 3 조례 제33호]

**제2조(적용)** ①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.

②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,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**제3조(수당)**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**제4조(여비)**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천시 공고 제 2007 - 823 호

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07. 6. 19.

제 천 시 장

##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조 례 명 : 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(안 제23조)

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9일까지 제천시장 (참조 자치운영팀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-5462, FAX 641-5469 담당자 : 최부금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

## &lt; 참고자료 &gt;

##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지급현황

구분	회의수당	급량비 일의 등	비고
청주시		센터별 1인당 5,000원	
충주시		센터별 1인당 5,000원	
제천시		센터별 1인당 월 20,000원	
청원군		센터별 1인당 5,000원	
보은군		센터별 1인당 월 10,000원	
옥천군	월 20,000원		
영동군	월 20,000원		
증평군		센터별 1인당 5,000원	
진천군		센터별 1인당 5,000원	
괴산군	월 35,000원		
음성군	월 30,000원 (pool)		
단양군		급량비 명목으로 센터별 연500,000원	

#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 지급현황

2007. 6월 현재

시·군·구	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 지급내역	비고
청 주 시	• 제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	
충 주 시	• 제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제 천 시	• 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	
청 원 군	• 제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보 은 군	• 제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옥 천 군	• 일반운영비(운영수당) : 20,000원×12회×주민자치위원수 • 제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옥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에 준하여 위원에게 수당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영 동 군	• 일반보상금(기타보상금) : 20,000원×12회×주민자치위원수 • 제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진 천 군	• 제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괴 산 군	• 일반운영비(운영수당) : 35,000원×12회×주민자치위원수 • 제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안에서 「괴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음 성 군	• 일반운영비(운영수당pool) : 30,000원×12월×주민자치위원수 • 제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단 양 군	• 제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	
증 평 군	• 제23조(실비보상등)...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	